

李 錫 泳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회계법인 특성이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

2006年

誠新女子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金 孝 恩

회계법인 특성이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

李錫泳 教授 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金 孝 恩

# 認 准 書

金孝恩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논문개요

선행되어진 회계서비스산업에서 감사수임료의 결정은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영업의 복잡성, 감사위험 등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대용치로 하여 수요적 관점이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공급적 관점에서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 즉, 회계법인의 특성이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그 이유는 어떠한 회계법인의 자료도 공시화 되지 않아 공급적 관점에서의 대용치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수임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구제금융체제에 돌입하게 되었고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회계제도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1998년 2월 외감법의 개정을 통하여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으며 공적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적 관점에서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전의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선행되어진 연구를 확장하여 수요적 관점과 공급적 관점 즉 피감사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되어진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통제변수, 회계법인의 특성을 독립변수, 감사수임료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회계법인의 독립변수인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 자기 자본/타인자본, 당좌비율, 총 공인회계사수에서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 총 직원수에서 비공인회계사가 차지하는 비율, MS가 감사수임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 회계감사서비스산업, 감사수임료, 회계법인, 피감사기업, 외감법, 공적공시

# 차 례

## 논문개요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구성 .....	4
제2장 우리나라 회계법인에 대한 개관 .....	5
제1절 회계법인의 역사 .....	5
제2절 감사수임료에 대한 제도적 변화 .....	9
제3절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 .....	13
제3장 기존문헌연구 .....	18
제1절 국외의 선행연구 .....	18
제2절 국내의 선행연구 .....	21
제4장 연구설계 및 연구가설 .....	26
제1절 연구가설 .....	26
제2절 연구설계 .....	31
제5장 실증 분석 .....	34
제1절 분석대상과 기간 .....	34
제2절 실증분석 결과 .....	35
제6장 요약 및 결론 .....	48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차 례

<표 2-1> 1999년 이전 감사보수체계 .....	10
<표 2-2>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	14
<표 2-3> 공인회계사의 세무관련업무 .....	15
<표 2-4> 공인회계사의 경영자문업무 .....	16
<표 5-1> 피감사기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1) .....	37
<표 5-1> 피감사기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2) .....	38
<표 5-1> 피감사기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3) .....	39
<표 5-2> 회계법인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	40
<표 5-3> 변수간의 상관관계 .....	43
<표 5-4> 회귀분석결과(1) .....	44
<표 5-4> 회귀분석결과(2) .....	45

## 그 립 차 례

<그림 2-1> 감사수임료와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와의 관계 .....	11
--	----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일반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회계산업 역시 서비스 산업의 일종으로써 인적자원의 공급요소를 투입하여 유형제품의 생산이 아닌 정보적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고 회계법인은 그의 합당한 수입료를 지불 받는다. 그러나 회계서비스산업의 경우 감사서비스 또는 비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산출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이나 거래방식이 일반재화나 다른 서비스 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결정된다. 감사서비스는 감사의 견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표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관찰 불가능성과 감사의견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상황이 복잡해진다. 또한 감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부실감사로 비취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여 선행되어진 회계서비스산업에서 수입료의 결정은 관찰 가능한 대응치(proxy)를 연결시켜 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영업의 복잡성, 감사위험 등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주로 대응치로 하여 회계서비스산업의 수요적 관점이 수입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1997년 하반기 우리나라는 구제금융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기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감사제도의 변화가 급격히 시작되었고 회계제도

체제 개편의 하나로 회계법인이 유한책임의 공인회계사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1997년 이전 회계법인은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시화의 의무를 갖지 않아 회계서비스산업에서 회계법인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급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수입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1998년 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칭함)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1998년 3월에 종료되는 1997년도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한국공인회계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개정된 외감법에 의해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가 공시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서비스산업의 공급적 관점에서 수입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1년 개정된 외감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10명과 자본금 5억으로 회계법인의 설립조건이 완화되었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보고서 공시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 외감법의 변화로 인하여 회계서비스산업의 경쟁이 촉진되었으며 이로 인한 회계서비스산업과 수입료에 관한 연구는 관심에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본 논문은 이전의 연구들을 확장하여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한 수요적 관점과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회

계법인의 특성을 이용한 공급적 관점이 수입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의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이용하여 수요적 관점이 수입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급적 관점에서 회계법인의 특성이 수입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한다.

셋째,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요적 관점과 회계법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공급적 관점이 수입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제2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 구성을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회계산업의 역사, 감사수임료에 대한 제도적 변화,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대용치로 하여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국외·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모형을 설계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적합한 변수를 선정하여 회계법인의 특성이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가설에 대해 실증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 제2장 우리나라 회계산업에 대한 개관

### 제1절 회계산업의 역사

우리나라의 회계산업은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30년대부터 계리사라는 명칭으로 회계대리와 세무상담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다. 1950년 3월 계리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1953년 12월 계리사법시행령이 통과된 후부터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란과 경제발전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그 후 10여년 동안 전문적인 감사업무는 극히 미미한 상태였으며, 대부분 기장대리 업무나 세무상담이 당시의 주요 업무였다.

본 논문은 경제적 흐름과 회계제도의 개편에 따른 회계산업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1960년대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하의 경제성장을 함에 있어 실물경제의 발달이 주류를 이루었고 회계제도의 개편으로 회계산업은 변환점을 맞게 되었다. 획기적인 변화점이 된 것은 모든 상장법인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제도화한 1963년 4월에 제정된 증권거래법이다. 또한 계리사의 명칭이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으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따라 1966년 7월에 계리사법이 폐지되고 공인회계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공인회계사의 직무내용이 구체화되었고, 또한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3차

에 걸쳐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은 보안과 회계법인의 신설이 필요하게 되어 동일연도에 1차 개정되었으며 이는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되었다. 회계법인의 신설에 관한 주요한 토대는 공인회계사 단체를 법적조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당시 회계법인의 설립조건은 회원이 공인회계사에 한하고, 사원은 5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2. 1970년대

1970년대 우리나라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증가로 인하여 자본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었다. 그에 따라 1973년 증권거래법을 개정,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증자, 사채발행, 기타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 대상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1976년에는 등록법인까지 그 범위를 넓혀 감사대상범위는 약2배로 증가하였다. 감사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증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기업회계원칙에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기업회계원칙의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1973년과 1976년에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강화, 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의 법령화,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부여 및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감리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회계제도체계를 강화 하였다<sup>1)</sup>. 1970년대 회계산업은 공인회계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 범위의 확대로 인하여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

1) 황인태, 강선민(2000) 한국 공인회계사조직의 변천

### 3. 1980년대

1980년대부터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이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회계산업에서도 1980년 12월 외감법의 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700여개의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에서 일거에 2,000개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80년대 후반에는 피감사기업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 또는 자산 총액 3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감사대상기업은 5,000개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회계법인의 설립조건에도 변화가 있어 1968년 공인회계사법 1차 개정으로 사원은 5인이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회계법인은 5인이상의 사원을 포함한 14인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회계산업의 시장 확대와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각종 회계제도들이 새롭게 마련되거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회계제도의 변화로는 감사인 선임제도이다. 1981년까지는 감사인 선임제도가 공인회계사회에서 피감사기업에 감사인을 배정하는 배정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82년부터 피감사기업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하여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자질 및 감사인에 대한 감사업무량이 고려되지 않은 강제 배정방식을 지양함으로써 감사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공정경쟁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감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확장된 감사 시장과 감사인의 수임제도 변화로 회계산업은 자유경쟁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회계법인간의 합병도 활발한 시기였다. 회계법인의 대형화, 전문화는 1980년대 기업회계감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시 강화되었다.

#### 4. 1990년대

1990년대 공인회계사의 조직은 회계법인<sup>2)</sup>, 합동회계사무소<sup>3)</sup>, 감사반<sup>4)</sup>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7년도 하반기 IMF 구제금융체제의 경제적 사건으로 인하여 감사인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회계법인과 감사반 중간단계로 존재하였던 합동회계사무소가 회계법인의 설립 규정의 완화로 폐지되었다. 또한 도산회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실패는 국내외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대형회계법인에 흡수, 합병되었다. 회계제도에서는 피감사기업의 확대<sup>5)</sup>, 감사수임료의 자율화<sup>6)</sup> 등 회계제도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IMF라는 경제적 사건은 회계산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듯하였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에 대한 자산실사, 급격히 늘어난 M&A에 따른 기업가치 실사,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업무 등 이전의 행해져 왔던 업무 외에도 M&A와 관련된 업무, 기업의 컨설팅 업무 등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회계산업의 활성을 촉진시켰다.

2) 1990년도 당시 회계법인은 소속공인회계사가 30인이상이어야만 설립이 가능하였다.

3) 공인회계사 10인이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회계감사를 포함한 모든 회계용역을 공동으로 제공한다. 회계법인이 상대하는 피감사기업보다 자산규모가 작은 업체를 대상으로 회계감사 및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4) 감사반은 3인 이상의 개인공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공인회계사는 별개의 사무실을 갖고 공인회계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나 외감법에 의해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5) 1998년 4월 외감법에 의하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그 전에는 6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6) 1967년 제정된 감사수임료의 규정은 감사수임료의 상한을 정하여 시행(공인회계사법 제14조)되었으나 1999년 이 규정이 폐지되어 감사인과 피감사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감사수임료결정체계가 자율화 되었다.

## 5. 현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회계산업은 정부의 경제정책추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의 회계산업은 외부감사에 대한 자발적인 수요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제적 규정에 의하여 회계산업은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IMF 이후 회계산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회계산업의 자체에서도 국제수준에 정합되는 제도와 실력을 갖추어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1년 개정된 회계법인의 설립조건<sup>7)</sup>과 피감사기업의 확대<sup>8)</sup>, 2002년 11월에 발표된 회계제도개혁방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제2절 감사수임료에 대한 제도적 변화

이전의 감사제도에서 감사수임료는 상한을 정하여 시행되었으나 1999년 이후 이 상한 제도는 폐지되었다. 본 논문에서의 목적은 피감사기업의 특성과 회계법인의 특성이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즉 수요적 관점과 공급적 관점이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감사수임료의 상한 제도의 폐지에 대한 감사수임료의 변화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7) 2001년 3월 개정된 회계법인의 설립조건은 공인회계사 10명과 자본금 5억으로 변경되었다.

8) 2001년 외감법에 의하여 피감사기업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 1. 1999년 이전 보수규정 시행시

과거 우리나라 감사보수규정은 기본보수와 가산보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2-1>에서 1999년 이전 감사보수체계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기본보수는 피감사기업의 직전 연도 자산총액에 비례하여 체계적으로 증가하도록 규정하였고, 가산보수는 피감사기업의 사업장 수, 상당 또는 등록 여부, 초도감사 여부, 외국어 보고서 작성여부,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에 따른 일정 보수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즉, 기본보수에 추가되는 감사업무에 대한 보상과 위험 보상적 성격으로 가산보

<표 2-1> 1999년 이전 감사보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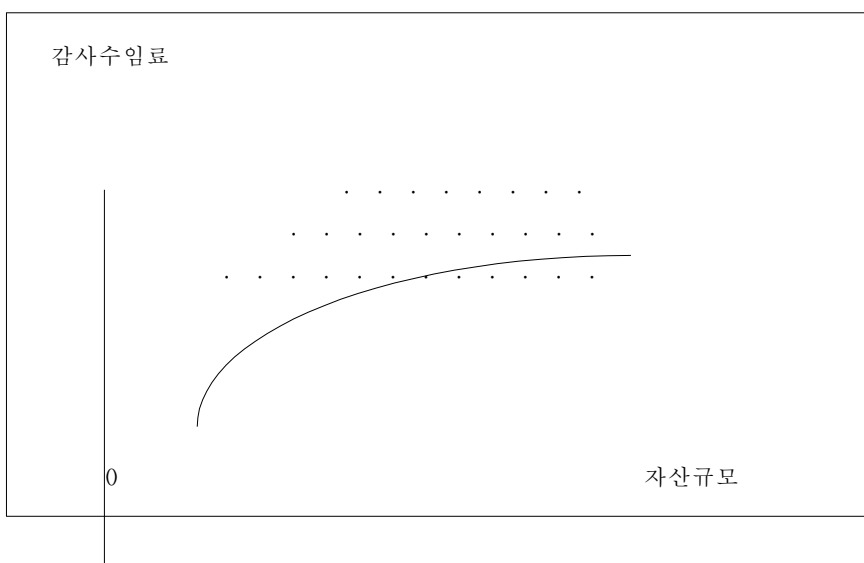
①기본 보수	$\begin{aligned} & \text{직하급자산규모의 보수액} \\ & + [(\text{직상급자산규모의 보수액} - \text{직하급자산규모의 보수액}) \\ & \times [(\text{당해자산총액} - \text{직하급자산규모}) / \\ & (\text{직상급자산규모} - \text{직하급자산규모})] \end{aligned}$
②사업장수에 따른 가산 보수	본사의 사업장수: 1개의 경우 ①의 10% 2개의 경우 ①의 15% 3개의 경우 ①의 20% 4개의 경우 ①의 25%
③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가산 보수	상장법인 = ①+②의 19% 등록법인 = ①+②의 14%
④감사인변경시 가산보수	①+②+③의 10%

자료: 공인회계사보수규정(1997년 5월 2일 증권관리위원회 승인)

수를 설정한 것이다. 또한 1998년까지는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인한 “공인회계사보수규정”에 의해 감사보수 상한 금액을 규정하였다. 감사보수 상한제도란 보수 공식에 따라 나온 감사보수이하로는 받을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뜻한

다. 이러한 제한은 감사투입시간이나 피감사기업의 산업이나 영업의 특수성 등 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적으로 자산비례로 감사수임료를 결정하였으며 그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림 2-1> 감사수임료와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와의 관계<sup>9)</sup>



<그림2-1>에서의 점들로 표시된 부분이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른 현실적으로 회계법인이 지불 받을 수 있는 감사수임료임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감사수임료의 최대한도를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감사수임료의 상한이 낮거나 또는 같게 책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감사보수의 제도는 법에 의한 강제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감사수임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낮은 감사품질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셈이었다. 외국의 감사수

9) 김호중, 이석영(1996) 현행 감사보수체계의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함.

임료와 비교를 한다면 미국의 경우 감사투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하는 경우와 고정급으로 감사수임료를 결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하여 국내의 감사수임료는 외국의 감사수임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임료를 지불받고 있어 부실감사의 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 2. 1999년 이후 보수규정 폐지 시

공인회계사보수규정은 1967년 1월에 제정된 이래 14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7년 5월 최종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1999년 2월 5일 공인회계사법 14조가 폐지됨에 따라 보수규정 또한 폐지되었다. 이 제도의 폐지에 따라 감사인과 피감사기업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감사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수규정이 폐지된 후에도 자유화된 감사수임료 책정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는 외감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회계감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장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의 설립조건 완화와 감사시장의 확대에 의하여 회계서비스산업은 그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의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회계법인들은 피감사기업의 확보를 위하여 감사수임료에 대한 절대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덤핑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회계법인의 이

---

10) 최관, 주인기(1998) 외부감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피감사회사의 특성별 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을 위하여 회계서비스산업의 주요한 투입요소인 감사시간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므로 감사의 질적 수준을 하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근래에 감사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소송이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회계서비스산업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감사수임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감사수임료에 하락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 **제3절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 C.P.A)란 기업이 여러 재무적 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시되어지는 재무제표의 공정성에 관하여 독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은 감사서비스로 끝나지 않고 비감사서비스 또한 중요한 업무로 자리 잡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주로 회계감사, 세무관련업무, 경영자문업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공인회계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및 그 부대업무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회계감사업무**

회계감사업무는 피감사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이다. 한 기업의 회계정보는 생산자와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과부족문제와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기적으

<표 2-2>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법정감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감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 -기타 특별법에 의한 회계감사
특수목적 감사	-금융기관, 법원, 주주 등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감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 -기타 특별법에 의한 회계감사
자발적 감사	-기업 등의 필요에 의한 감사
기업진단업무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의약품도매업 등 업종별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주식상장 및 코스닥 등록 관련 서비스	-사업계획 작성 및 재무분여 Projection -기업가치평가 및 적정자본규모, 공모가액 산정
회계서비스업무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주식평가 -법원 또는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한 감정 등 서비스 -건설, 주택, 전력사업 등의 도급을 위한 다양한 재무분석 -재무제표 기장서비스

<http://www.kicpa>

참조

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정보의 과부족과 신뢰성 문제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공인회계사만의 고유한 업무이다. <표 2-1>에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경제규모의 확대에 인하여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는 객관적

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주식투자확대, 소수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투명경영필요성의 증가에 따른 재무적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게 부각되어져 그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 2.세무관련업무

<표 2-3>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세무관련업무를 나타내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세무관련업무는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업무로서 피감사기업의 세금환급의 작성이나 세금계획의 수립 등 세무처리상의 문제점을

**<표 2-3> 공인회계사의 세무관련업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등	-법인세 신고대리 및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신고대리
조세문제 해결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대행 -세무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조력 -세무실사에 대비한 기업의 회계처리, 증빙에 대한 사전검토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세무계획 수립	-재무계획과 연계된 세무계획 수립 -특정거래, 계약 등에 수반되는 세무문제 사전검토
국제조세 관련 업무	-이전가격세제, 반덤핑 문제에 대한 세무자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 관련한 세무자문 -합작투자와 기술도입과 관련한 세무자문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관련된 세무자문 -국제조세 최소한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자료: <http://www.kicpa>

발견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세무처리상의 실수를 방지하

여 과세장국의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업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업무영역은 국내의 세무사제도가 있기에 공인회계사가 세무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마찰을 겪고 있기도 하다.

### 3.경영자문업무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업무는 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회계법인들이 개척해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이다. <표 2-4>에 공인회계사의 경영자문업무를 나타내고 있다.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인이 경영자문업무를 병행 할 시 피감사기업의 정보에 대하여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소의 투입으로 정보적 산출을

<표 2-4> 공인회계사의 경영자문업무

장·단기 경영전략수립	
경영혁신과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기업의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기업조직의 재편 및 최적화 -전사적 자원관리(ERP)자문 -새로운 투자선의 모색과 관련된 자문
정보시스템구축 등 전산용역	-전산회계처리시스템 구축 -통합정보소프트웨어 설치 및 교육 컨설팅 등
사업타당성 분석	-시장분석 및 예측 -마케팅 전략지원 -기업인수, 합병대상의 선정 및 평가
기타자문업무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내부감사제도 입안 및 평가 -경영실적평가제도 입안

자료: <http://www.kicpa>

얻을 수 있으며 회계감사업무에 비해 많은 수입료를 지불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독립

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지기도 한다. 국내의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업무 수준은 기업실무관리를 입안하고 자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회계산업의 경쟁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경영자문업무에 대한 회계법인의 관심과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 제3장 기존문헌연구

선행 연구들은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대용치로 한 수요적 관점이 수입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공통적인 형태는 피감사기업의 재무적, 영업적 특성에 대한 대용치를 사용하여 감사보수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의 초점이 되는 요인을 추가하여 수입료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포함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특성이 수입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으나 회계산업의 산업집중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감사수입료와의 관계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제1절 국외의 선행연구

#### 1. 1980년대 선행연구

감사보수의 연구에 있어 대표적 역할을 한 Simunic(1980)은 감사수입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감사의견, 종속회사의 수, 업종의 다양성, 해외자산 규모, 외상 매출금의 규모, 채고자산의 규모 등 11가지 설명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1가지 설명변수 중 피감사기업의 자산 규모가 종속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시장의 경쟁 강도가 높은 것에 비하여 대기업의 감사시장은 Big8 회계법인의 독점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시행하였다. 피감사기업을 대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하

여 각 그룹별 Big8회계법인과 Non-Big8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대기업과 소기업 감사시장에 대한 Big8회계법인과 Non-Big8회계법의 감사수임료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미국과 감사수임료체계가 비슷한 우리나라로써 자산규모가 감사수임료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은 주목할 만하다.

Francis(1984)는 Simunic(1980)의 연구를 호주 감사시장을 대상으로 재현하였다. Francis는 변수선정에 있어 Simunic(1980)의 모형과는 다른 변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변수선정에 있어 피감사기업의 사업이 속하는 산업의 수, 해외자산의 규모 및 현행 감사인의 감사시간 등은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용하지 않았으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율 대신 유동자산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에서는 Big8회계법인이 Non-Big8회계법인보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ncis and Stokes(1986)는 Simunic(1980)와 Francis(1984)의 연구결과가 상이한 원인을 밝혀보고자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Simunic(1980)의 표본기업이 주로 대기업이었던 반면에 Francis(1984)의 표본기업은 중소기업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호주의 상장기업 중 최대규모의 100개사와 최소규모 1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Francis(1984)와 동일한 연구모형을 사용하여 두 기업집단에 대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 최대기업집단에서는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른 감사수임료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집단에서는 Big8의 감사수임료가 Non-Big8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rancis and Simon(1987) 연구에서는 Simunic(1980)의 연구모형을 비교적 소규모의 피감사기업에 적용한 결과 Big8 회계법인의 경우 타 회계법인에 비하여 소규모의 피감사기업의 감사수임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Big8 회계법인이 소규모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회계서비스산업에서 차별화된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도감사계약의 경우 계속감사에 비하여 감사수임료가 유의적으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감사수임료의 인하현상이 감사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Palmorse(1989)은 감사계약을 고정급 감사수임료계약과 투입시간비례 감사수임료계약으로 2가지 형태로 나누어 감사수임료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고정급 감사보수계약의 경우 감사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감사투입시간은 투입시간비례 감사계약보다 작지 않았기에 고정급 감사계약이 부실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정급 감사보수계약은 일반적으로 감사초기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며, 감사계약기간이 5년을 넘어 피감사기업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을 경우 투입시간비례 감사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1990년대 선행연구

Macher(1992)은 미국 감사시장의 경쟁 심화가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감사환경변화에 따른 감사수임료의 변화패턴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의 차이가 있었다. 피감사기업의

총수익, 피감사기업의 사업이 속한 산업수, 해외자산의 비중,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비중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977년과 1981년 사이에 실제로 현저한 감사수임료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감사시장의 경쟁 심화가 감사수임료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판명되었다.

Beatty(1993)은 Francis and Simon의 1887년 연구와 초도 주식공개기업의 경우를 비교 연구한 것으로 감사의견을 제외한 피감사기업의 규모, 종속회사의 수,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합계 및 감사인 규모를 설명 변수로 하였다. 연구 결과 초도 주식공개기업의 감사수임료 결정요인도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감사수임료 결정요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 **제2절 국내의 선행연구**

### **1. 1990년대 선행연구**

김호중과 이석영(1996)은 1990년대 발생한 형사·민사 소송사태를 분석기술하고 감사시장의 현황과악을 통해 시장 규모를 추정하여 감사인의 관점에서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결여된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당시 감사보수체계가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에 근거한 보수체계를 평가하고, 이로 인하여 적정 이하의 감사수임료는 감사투입시간 부족으로 인한 감사범위의 제한을 초래하는 부실감사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감사기업의 산업특성 등 감사수임료의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제도적 개선과 외감법 대상 이외의 공인법인에 대한 법정 감사 범위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주인기와 최관(1997)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감사수임료 및 감사 투입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회계법인들이 실제 투입하는 감사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자산규모, 해외매출액의 비율, 상장 여부 및 산업특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수임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총자산 규모, 해외매출액의 비중, 상장여부, 초도감사 여부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실제 감사계약서상의 감사계약금액을 이용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사수임료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기간 및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점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관·주인기(1998)는 감사보수체계에서 감사인이 실제로 투입하고 있는 감사시간에 대하여 얼마나 적정하게 감사수임료를 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즉, 감사보수 체계 하에서 감사수임료와 실제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감사수임료를 계산하여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피감사기업의 분석에서는 자산규모 3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감사시간당 감사수임료가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임대업과 서비스업의 시간당 감사수임료가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건설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감사인의 투입노력에 비례하여 감사수임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보수규정은 상장기업과 초도감사기업에 대해서

는 가산보수를 주고 있으나 상장기업과 초도감사기업의 감사시간당 감사수임료는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추가적 분석에서 국내의 감사수임료를 선진 여러 국가들과 비교하여 감사수임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간접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감사수임료는 외국의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최관과 백원선(1998)은 Francis and Simon(1987)에서 사용된 감사수임료 모형을 이용하여 Big5 제휴법인과 국내회계법인간에 감사수임료와 감사시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Big5 제휴법인과 국내회계법인간의 별다른 감사수임료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연구기간 중의 감사수임료 규정이 감사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2000년대 선행연구**

최관과 이화진(2000)은 감사수임료 자유화 시점을 전후로 감사인의 유형간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업에 속하는 전체 피감사기업들을 대상으로 1998년과 1999년에 감사인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사수임료가 자유화 되기 이전인 1998년에는 감사유형 간에 감사수임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사수임료의 자유화가 된 1999년에는 Big5 제휴법인의 감사수임료가 국내회계법인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수영과 김문철(2001)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감사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감사수임료를 기초로 감사보수 결정모형을 추정하고, 이 모형을 기초로 1999년 종전의 감사보수규정이 폐지되고 감사수임료 결정이 자율화된 이후 감사수임료의 변동 및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피감사기업의 규모, 영업의 복잡성,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비율, 상장 여부, Big6의 제휴여부, 피감사기업이 속한 산업 등이었다. 분석 결과 감사수임료 자율화 이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 기간에도 Big6 제휴법인의 감사수임료가 국내법인의 감사수임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비중과 같은 피감사기업의 특성과 감사인의 평판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금융업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감사수임료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의 감사수임료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연구는 최관과 이화진(2000)의 연구에서 제외된 금융업을 포함한 피감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모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또한 Big6 제휴법인의 감사수임료가 국내법인의 감사수임료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는 감사품질에 따라 감사수임료가 차등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감사수임료자료에 의한 분석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명곤과 임진택(2005)은 최초로 감사인의 산업전문화가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3년도 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피감사기업에 속한 산업특성을 금융업과 보험관련서비스업처럼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 규제산업과 비규제

산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감사인의 산업전문화가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비규제산업에서 산업전문감사인은 산업비전문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감사수임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자율적인 감사수임료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산업특별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권수영·손성규·이영한(2005)은 우리나라 감사환경에서 감사수임료가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고 피감사기업의 규모, 산업, 감사위험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적정수준의 감사수임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의 감사수임료의 절대금액이 낮은 수준이며 보수기준 폐지이후 감사수임료의 덩핑현상까지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 적정수준의 감사수임료를 지급받지 못한 감사인은 적정감사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므로 감사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적정감사수임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사시간의 적정수준과 감사시간 당 적정임률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실무에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피감사기업에 대해 실제감사시간과 적정감사시간 및 실제시간당 임률과 적정시간당 임률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감사투입시간은 대체로 자산규모, 사업장수, 해외매출비중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투입했어야 할 적정감사시간을 고려할 경우 은행/금융업종, 산업고유위험, 공개여부 등이 감사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제4장 연구설계 및 연구가설

### 제1절 연구가설

기존의 연구들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수임료와의 관계를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연구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관찰 가능한 대용치를 선정하여 감사수임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공적정보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내의 회계체계의 변화로 인해 회계법인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사업보고서의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적 관점에서의 대용치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감사수임료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피감사기업의 특성과 함께 피감사기업의 특성이 감사수임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변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수임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회계서비스 산업에서 회계법인이 경쟁적이지 못하면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위하여 회계법인의 설립조건 완화, 감사대상의 확대 등 회계제도의 규제 변화를 통해 회계서비스산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자의 증가와 시장 확대를 통해 현재의 회계서비스산업은 치열한 경쟁 상태에 놓여있으며 피감사기업은 수요적 관점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월등한 능력을 지닌 회계법인을 선택하려 한다. 피감사기업의 외관적인 관점에서 월등한 회계법인 선택의

기준은 회계법인의 대형화 정도를 들 수 있으며 외국의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회계법인은 그의 명성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대형 회계법인의 제휴를 통해 사원들에게 더 나은 경력과 연수를 제공하여 우수한 사원을 양성하고 다국적 기업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등 이다. 그러므로, 외국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국내의 회계법인은 그들의 명성과 비례하여 감사수임료를 요구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가설1: 감사수임료는 국제적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회계법인이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대형 회계법인이 소형 회계법인에 비하여 감사수임료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가 높은 것은 회계법인의 명성 혹은 지급능력이 높기 때문이라 한다. 다시 말해, 대형회계법인은 법적 소송에 패소 할 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지급능력의 유지를 중시하므로 감사수임료가 높다는 이론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ye 1993). 이러한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재무적 공시 자료를 이용한 대용치가 필요하였으나 자료수집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997년 회계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공시되어지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회계법인의 재무적 자료를 대용치로 이용, 앞에서 언급한 재무자본과 지급능력이 감사수임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재무자본 및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2가지 재무변수로 타인 자본 대비 자기자본, 당좌비율을 대응치로 사용하였다.

재무변수의 대응치로 사용한 타인자본 대비 자기자본에서 타인자본은 외부에서 차입한 자본이기에 부채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타인자본의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자기자본의 경우 배당금을 받게 된다. 이는 자본의 구성비율이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에 비하여 클 경우 채무의 건전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논의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검증 될 수 있다.

가설2(a): 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의 타인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또한 당좌비율은 단기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위험자산인 매출채권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래현금흐름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어 회계법인의 지급능력에 대한 대응치로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이 검증 될 수 있다.

가설2(b): 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의 당좌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아직 고찰되고 있지 않은 감사수임료에 관한 것 중 회계법인의 소유구조가 감사수임료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이다. 소유지분을 갖고 있으며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를

사원이라 한다. 소수의 사원에게 소유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회계법인은 피감사기업의 감사 실패 시 법적 소송에 대한 사원 일인당 손해배상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영업범위확장을 기피하고 기존의 피감사기업을 유지하려는 안전한 경영전략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소유지분이 다수의 사원에게 분산되어 있는 회계법인은 감사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낮아지므로 사원들은 피감사기업의 확보를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려는 경영전략을 펼칠 것이며 이는 회계법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원 개개인의 효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지분이 소수 사원에게 집중되었을 시에는 감사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높은 감사수임료를 요구 할 것이며 소유지분이 많은 사원에게 분산 되었을 시 감사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인당 책임액이 적어지므로 보다 낮은 감사수임료를 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유지분을 가진 사원의 분산 정도에 따라 감사수임료와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이 검증 될 수 있다.

가설3: 감사수임료는 총 회계사수에서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회계법인의 특성상 투입요소는 주로 인적자원이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업무활동을 측정하는 요소로 감사시간을 대용치로 하여 산출 요소인 감사수임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업무가 다각화되어지고 영업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 업무인 회계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비감사서비스 업

무 또한 감사수임료 결정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 되었다 하더라도 비감사업무 수행 중 감사업무외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가 주어졌을 시 회계법인은 그에 합당한 업무 처리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자문업무에 대한 국내의 회계법인의 수준은 미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장기비전이나 경영 전략수립은 아직 외국계 컨설팅사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총 직원 중 비공인회계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능력을 뜻하며 이는 회계법인의 다양한 업무를 능숙히 처리할 수 있는 명성을 보여주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검증 될 수 있다.

가설4: 감사수임료는 총 직원수에서 비공인회계사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감사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회계법인은 여러 산업의 피감사기업을 고객으로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실무경험을 접하게 된다. 한 회계법인이 한 산업에 속한 다수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다면 이는 그 특정한 산업에서 다른 회계법인보다 전문화 되었을 것이다. 또한 특정한 산업에서 다수의 피감사기업을 상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피감사기업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이 또한 특정한 산업에 대

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회계법인이 특정업종에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얻는 학습 효과로 인하여 다른 회계법인에 비하여 전문화 되었을 것이다. Defound et al.(2000)에 의하면 산업전문감사인은 차별화된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수임료를 청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Craswell et al.(1995)는 호주 감사시장에서는 Big6 산업전문감사인은 산업비전문감사인에 비해 더 높은 감사수임료를 청구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즉, 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이 다수 점유하고 있는 산업내의 피감사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시 그 회계법인에 속한 감사인은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요구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가설5: 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의 산업별 전문화가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 제2절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들의 확장하여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한 수요적 관점과 회계산업의 사업보고서를 통한 회계법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공급적 관점에서 감사 수임료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감사수임료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으로 설정하였고 감사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적 관점에서의 재무 및 시장변수와 연도별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였다. 회계법인의 특성인 국제

적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관계, 회계법인의 재무자본 및 지급능력, 소유구조 및 직원의 구성, 회계법인의 산업별 전문화는 독립변수로 하여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text{AUDIT} = & \alpha_0 + \alpha_1 \cdot \ln\text{TA} + \alpha_2 \cdot \text{SQEMPLS} + \alpha_3 \cdot \text{DA} + \alpha_4 \cdot \text{LIQ} + \alpha_5 \cdot \text{INREC} \\
 & + \alpha_6 \cdot \text{ROA} + \alpha_7 \cdot \text{INSTIT\_PCT} + \alpha_8 \cdot \text{LOSS} + \alpha_9 \cdot \text{GR\_SALES} \\
 & + \alpha_{10} \cdot \text{VOLITILITY} + \alpha_{11} \cdot \text{BM} + \alpha_{12} \cdot \text{XDOPS} + \alpha_{13} \cdot \text{RETURN} \\
 & + \alpha_{14} \cdot \text{OPILION} + \alpha_{15} \cdot \text{NEWAUD} + \alpha_{16} \cdot \text{NEWAUD\_1} \\
 & + \beta_1 \cdot \text{SQEMP} + \beta_2 \cdot \text{BIG5} + \beta_3 \cdot \text{EQDEBT} + \beta_4 \cdot \text{QUICK} \\
 & + \beta_5 \cdot \text{PART\_PROF} + \beta_6 \cdot \text{OTHER\_EMP} + \beta_7 \cdot \text{MS} \\
 & + \gamma_1 \cdot \text{YEAR00} + \gamma_2 \cdot \text{YEAR01} + \gamma_3 \cdot \text{YEAR02} + \gamma_4 \cdot \text{YEAR03} + \varepsilon
 \end{aligned}$$

**종속변수: 감사수임료**

$\ln\text{AUDIT}$  = 감사수임료의 자연로그 값

**통제변수: 피감사대상기업**

$\ln\text{TA}$  = 총자산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

$\text{SQEMPLS}$  = 총 종업원 수에 제곱근을 취한 값

$\text{DA}$  = 부채비율(부채/총자산)

$\text{LIQ}$  = 당좌비율

$\text{INRVEC}$  = (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text{ROA}$  = 영업이익/총자산

$\text{INSTIT\_PCT}$  =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비율

$\text{LOSS}$  = 당기 손실발생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text{GR\_SALES}$  = 매출액 성장률

$\text{VOLATILITY}$  = 시장모형으로부터의 잔차의 분산

BM =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액 비율  
XDOPS = 특별손익항목 존재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RETURN = 주식수익률  
OPINION = 비적정감사의견에 대한 더미변수  
NEWAUD, NEWAUD\_1 = 당기 및 전기에 감사인교체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독립변수: 회계법인**

SQEMP = 회계법인 총 직원수에 제곱근을 취한 값  
BIG5 = 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EQDEBT = 자기자본/타인자본  
QUICK = 당좌비율  
PART\_PROF = 사원수/총 공인회계사수  
OTHER\_EMP = 비공인회계사 직원수/총직원수  
MS = 산업별로 계산된 총 감사수임료 중 각 회계법인이 획득한 감사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

**통제변수: 연도별 더미변수**

YEAR00 = 2000년 회계연도에 속하면 1, 아니면 0  
YEAR01 = 2001년 회계연도에 속하면 1, 아니면 0  
YEAR02 = 2002년 회계연도에 속하면 1, 아니면 0  
YEAR03 = 2003년 회계연도에 속하면 1, 아니면 0

## 제5장 실증 분석

### 제1절 분석대상과 기간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데이터 수집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종속변수인 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에 대한 데이터 수집, 두 번째로 통제변수로 정의한 피감사기업의 재무자료 및 주식시장자료 데이터 수집이며 세 번째는 독립변수로 정의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다.

#### 1. 피감사기업의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피감사기업의 표본으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금융업에 속한 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기간에 해당되는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피감사기업의 수는 477개, 511개, 503개, 488개였다. 종속변수인 감사수임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에 수록된 해당기업의 사업보고서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하였다. 통제변수인 피감사기업의 재무자료 및 주식시장자료는 한신평 DB KIS-FAS, KIS-SMART, 그리고 상장협 DB TS-2000으로부터 자료수집이 가능하였다.

#### 2. 회계법인의 데이터 수집

독립변수인 회계법인의 데이터는 1998년 1월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

회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로부터 자료를 추출하였다. 해당기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회계법인의 수는 32개, 34개, 53개, 63개였다. 1999년 5월에는 세종회계법인이 안진회계법인에 합병됨에 따라 1999회계연도의 표본은 32개로 확정되었다. 2000회계연도 중 산동회계법인이 청산되었으며, 새빛, 대일 및 성도회계법인이 신설되어 표본은 34개로 확정되었다. 2001회계연도에는 21개의 회계법인이 신설되어 53개의 표본을 확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2회계연도에는 세정회계법인이 청산되고 10개의 회계법인이 신설되어 63개의 표본이 확정되었다.

## **제2절 실증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감사기업의 기술통계량, 회계법인의 기술통계량, 변수간의 상관계수의 결과를 나타내고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결과를 말해보고자 한다.

### **1. 변수들의 기술통계**

각 변수들에 대한 연도별 기술통계량은 표로 나타내었다. <표 5-1>은 1999년부터 2002년의 연구기간에 피감사기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수인 감사수임료의 기술통계량을 먼저 살펴보면 피감사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의 경우 1999년 6,072만원이었으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6,804만원, 7,851만원, 8,737만원으로 연구기간 4년동안 연도별로 그 평균이 증가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

지의 피감사기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에 있어 감사수임료의 평균은 중위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규모의 피감사기업의 감사수임료와 소규모의 피감사기업 감사수임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피감사기업의 TA(총자산)의 경우 2000년에는 약 4%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후 2002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MPLOYEE(총직원의 수)의 경우 1999년 1475.4명에서 2000년 1615.83명으로 약 140.43명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1470.38명으로 199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2002년에도 감소추세이다. DA(부채비율)은 2000년 3.2%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이 후 4.6%, 13.55%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당좌비율(LIQ)과 ROA의 경우는 DA와 반대로 2000년에 미세한 감소가 있었으나 그 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INVREC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08%증가, 0.56%감소, 0.85%증가를 보이며 일정한 변화가 없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INSTIT\_PCT(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율)변수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0.91%, 5.01%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2002년까지는 0.4%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GR\_SALES(매출성장율)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4.28%, 7.76%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2002년에는 9.82% 증가하여 큰 폭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INSTIT\_PCT와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RETRUN(주식수익률)의 경우 1999년 0.38%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0.28%의 수치를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에는 0.62%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2년에는 0.01%를 나타내고 있어 감소와 증가의 추세를 일정하지 않게 나타내고 있다.

<표 5-1> 피감사기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1)

변 수	평균	표준편차	1/4분위수	중위수	3/4분위수
<b>1999년 (N=4777)</b>					
AUDIT	60.72	57.47	31.00	41.16	65.00
TA	989207.36	3703771.05	85219.59	193037.34	539223.47
EMPLOYEE	1475.40	4124.30	242.00	467.00	1044.00
DA(%)	68.28	76.32	44.92	57.97	72.65
LIQ(%)	154.42	110.18	88.23	130.35	184.33
INVREC(%)	26.66	13.70	16.92	25.04	34.47
ROA(%)	3.79	9.47	1.41	4.46	7.54
INSTIT_PCT(%)	34.81	25.49	13.40	30.60	51.80
LOSS	0.47	0.50	0	0	1.00
GR_SALES(%)	18.73	75.36	0-3.64	7.55	25.91
VOLATILITY	0.05	0.01	0.04	0.05	0.06
BM(%)	-14.16	199.11	0.08	0.17	0.30
XDOPS	0.47	0.50	0	0	1.00
RETURN	0.38	1.93	-0.31	-0.03	0.52
OPINION	0.16	0.37	0	0	0
NEWAUD	0.39	0.49	0	0	1.00
NEWAUD_1	0.31	0.46	0	0	1.00
<b>2000년 (N=511)</b>					
AUDIT	68.04	72.44	33.26	44.00	70.63
TA	1032797.13	3811025.59	88009.86	198826.60	535338.67
EMPLOYEE	1615.83	4820.39	251.00	480.00	1063.00
DA(%)	71.48	119.34	43.23	58.39	74.99
LIQ(%)	152.83	117.62	83.63	121.60	180.39
INVREC(%)	27.74	14.60	17.17	25.72	36.86
ROA(%)	3.84	9.91	1.50	4.77	7.91
INSTIT_PCT(%)	35.72	26.90	12.10	30.30	54.30
LOSS	0.42	0.49	0	0	1.00
GR_SALES(%)	14.45	38.78	-1.02	10.19	24.03
VOLATILITY	0.05	0.01	0.04	0.05	0.06
BM(%)	-124.62	4568.39	0.13	0.25	0.43
XDOPS	0.32	0.47	0	0	1.00
RETURN	-0.28	0.49	-0.57	-0.37	-0.15
OPINION	0.14	0.35	0	0	0
NEWAUD	0.21	0.41	0	0	0
NEWAUD_1	0.42	0.49	0	0	1.00

<표 5-1> 피감사기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2)

변 수	평균	표준편차	1/4분위수	중위수	3/4분위수
<b>2001년 (N=503)</b>					
AUDIT	78.51	93.14	37.63	50.70	79.96
TA	975310.31	3368634.45	89352.15	195405.35	515014.27
EMPLOYEE	1470.38	4588.05	224.00	427.00	974.00
DA(%)	66.88	122.14	38.43	55.87	71.73
LIQ(%)	159.25	131.62	79.59	122.96	184.61
INVREC(%)	27.18	14.14	16.67	25.58	35.88
ROA(%)	4.00	8.99	1.13	4.58	7.96
INSTIT_PCT(%)	40.73	28.44	16.30	36.30	61.00
LOSS	0.40	0.49	0	0	1.00
GR_SALES(%)	6.69	68.31	-7.33	2.93	12.64
VOLATILITY	0.05	0.13	0.03	0.04	0.05
BM(%)	-0.07	3.22	0.10	0.20	0.32
XDOPS	0.24	0.43	0	0	0
RETURN	0.62	1.87	-0.02	0.25	0.74
OPINION	0.10	0.30	0	0	0
NEWAUD	0.14	0.35	0	0	0
NEWAUD_1	0.21	0.41	0	0	0
<b>2002년 (N=488)</b>					
AUDIT	87.37	114.96	40.18	55.37	86.45
TA	968575.43	3574947.05	84953.25	190939.29	503698.46
EMPLOYEE	1418.13	4434.71	225.50	529.00	956.50
DA(%)	53.33	38.62	35.38	50.76	65.39
LIQ(%)	165.94	134.33	86.61	130.25	195.07
INVREC(%)	28.03	14.47	16.95	26.54	37.08
ROA(%)	4.95	8.60	2.26	5.28	8.96
INSTIT_PCT(%)	40.33	26.95	17.70	37.23	62.29
LOSS	0.41	0.49	0	0	1.00
GR_SALES(%)	16.51	146.64	-4.83	5.15	14.15
VOLATILITY	0.06	0.17	0.03	0.03	0.04
BM(%)	0.27	0.46	0.13	0.24	0.36
XDOPS	0.19	0.39	0	0	0
RETURN	0.01	0.76	-0.33	-0.11	0.10
OPINION	0.09	0.28	0	0	0
NEWAUD	0.17	0.37	0	0	0
NEWAUD_1	0.16	0.37	0	0	0

<표 5-1> 피감사기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3)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1/4분위수	중위수	3/4분위수
<b>1999-2002년 (N=1,979)</b>					
AUDIT	73.70		35.00	48.00	75.00
TA	991842.92	87.77	87417.27	194947.30	528577.47
EMPLOYEE	1496.26	3615682.73	233.00	456.00	994.00
DA(%)	64.07	4502.71	40.36	55.92	70.94
LIQ(%)	158.08	96.31	84.29	125.89	185.14
INVREC(%)	27.41	123.91	16.99	25.60	36.06
ROA(%)	4.14	14.24	1.56	4.83	8.01
INSTIT_PCT(%)	37.91	9.27	14.37	33.82	57.40
LOSS	0.43	27.090.49	0	0	1.00
GR_SALES(%)	13.93	90.85	-4.57	6.24	18.14
VOLATILITY	0.05	0.11	0.03	0.04	0.05
BM(%)	-35.54	2322.38	0.11	0.21	0.35
XDOPS	0.30	0.46	0	0	1.00
RETURN	0.18	1.45	-0.37	-0.09	0.29
OPINION	0.12	0.33	0	0	0
NEWAUD	0.23	0.42	0	0	0
NEWAUD_1	0.28	0.45	0	0	1.00

<표 5-3>의 (3)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구기간 동안의 감사수임료와 피감사기업의 통제변수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4개연도의 해당되는 피감사기업의 수는 1,979개이며 감사수임료의 평균은 7,370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총 종업원수는 평균 1,496.26명이며 TA의 경우 평균이 중위수 보다 약 5.08배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DA와 LIQ는 각각 64.07%, 158.08%를 나타내고 있으며 ROA, GR\_SALES, RETURN의 경우 각각 4.14%, 13.93%, 0.18%를 나타내고 있다.

<표 5-2> 회계법인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 수	평균	표준편차	1/4분위수	중위수	3/4분위수
<b>1999년 (N=32)</b>					
EMP	580.68	407.58	250.00	493.00	638.00
BIG5	0.69	0.46	0	1.00	1.00
EQDEBT(%)	51.99	32.23	28.67	39.21	58.33
QUICK(%)	139.61	51.59	103.97	119.13	154.44
PART_PROF(%)	18.16	17.77	7.48	9.83	19.27
OTHER_EMP(%)	38.20	11.59	29.62	36.71	40.37
MS(%)	15.63	13.86	5.83	10.55	21.74
<b>2000년 (N=34)</b>					
EMP	681.17	553.93	247.00	636.00	674.00
BIG5	0.70	0.46	0	1.00	1.00
EQDEBT(%)	49.39	24.24	32.40	42.77	75.26
QUICK(%)	134.57	31.60	118.48	125.85	161.23
PART_PROF(%)	18.74	19.20	7.19	10.25	18.87
OTHER_EMP(%)	39.20	12.67	32.13	32.49	41.41
MS(%)	16.31	18.80	3.70	5.99	16.88
<b>2001년 (N=53)</b>					
EMP	837.91	742.17	272.00	582.00	2061.00
BIG5	0.69	0.46	0	1.00	1.00
EQDEBT(%)	44.74	16.20	30.87	40.19	51.64
QUICK(%)	104.77	16.83	93.53	107.16	108.06
PART_PROF(%)	17.58	18.27	4.75	8.36	20.00
OTHER_EMP(%)	39.58	12.38	31.02	37.70	40.29
MS(%)	18.15	19.89	2.72	6.77	29.01
<b>2001년 (N=63)</b>					
EMP	755.59	731.19	293.00	493.00	638.00
BIG5	0.66	0.47	0	1.00	1.00
EQDEBT(%)	46.44	24.44	33.20	42.81	48.27
QUICK(%)	129.31	37.67	108.31	129.24	137.71
PART_PROF(%)	20.39	20.34	9.24	9.92	26.62
OTHER_EMP(%)	40.24	14.20	31.03	33.86	50.91
MS(%)	17.76	19.35	3.07	11.06	18.90
<b>1999-2001년 (N=182)</b>					
EMP	715.14	631.99	250.00	561.00	727.00
BIG5	0.69	0.46	0	1.00	1.00
EQDEBT(%)	48.11	24.96	30.87	40.73	53.62
QUICK(%)	126.91	38.72	103.97	118.48	140.01
PART_PROF(%)	18.71	18.93	7.14	9.92	23.81
OTHER_EMP(%)	39.31	12.76	31.03	34.34	44.74
MS(%)	16.97	18.19	3.70	7.72	21.74

<표 5-2>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 각 연도별 회계법인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연구기간 4개연도 전체 회계법인의 변수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EMP(회계법인의 총 직원수)는 1999년에는 580.68명이었으나 2001년까지 100.49명, 156.74명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755.59명으로 82.32명 감소하는 추세이다. BIG5(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1999년에 총 피감사기업들 중 69%가 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에는 70%가 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국내의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하였고 1999년에 비하여 1%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1년 BIG5의 수치는 69%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2002년에는 66%로 2001년보다 3%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EQDEBT(자기 자본/타인자본)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2.6%, 4.65% 감소가 나타났으나 2002년에는 1.7%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QUICK(당좌비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04%, 29.8%로 2000년과 2001년 사이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2001년 2002년 사이에 다시 24.54%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기간동안 PART\_PROF(사원수/총 공인회계사수)는 18.16%, 18.74%, 17.58%, 20.39%으로 나타났으며 OTHER\_EMP(비공인회계사 직원수/총직원수)는 38.20%, 39.20%, 39.58%, 40.24%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MS(산업별로 계산된 총 감사수임료 중 각 회계법인이 획득한 감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0.68%, 1.84%로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년에는 0.39%가 감소하였다.

연구기간 전체의 회계법인의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EMP는 평균 715.14명으로 나타났고 Big5와 제휴한 국내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피감사기업은 평균적으로 69%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QDEBT와 QUICK는 48.11%, 126.91%로, PART\_PROF와 OTHER\_EMP는 각각 18.71%, 39.31%를 나타내고 있다.

## 2. 변수간의 상관관계

표본기간의 폴링 데이터에 대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표 5-3>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lnAUDIT(감사수입료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와 SQEMP(회계법인 총 직원수에 제곱근을 취한 값), BIG5, MS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EQDEBT와 QUICK는 lnAUDIT사이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진 않으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PART\_PROF의 경우 lnAUDIT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5-3> 변수간의 상관관계

	<i>ln</i> AUDIT	SQEMP	BIG5	EQDEBT	QUICK	PART _PROF	OTHER _EMP	MS
<i>ln</i> AUDIT	--	0.291 (0.000)	0.278 (0.0003)	0.070 (0.002)	0.026 (0.249)	-0.313 (0.000)	-0.145 (0.000)	0.286 (0.000)
SQEMP	0.318 (0.000)	--	0.797 (0.000)	0.112 (0.000)	-0.013 (0.551)	-0.858 (0.000)	-0.313 (0.000)	0.692 (0.000)
BIG5	0.283 (0.000)	0.719 (0.000)	--	-0.025 (0.274)	0.033 (0.142)	-0.795 (0.000)	-0.409 (0.000)	0.216 (0.000)
EQDEBT	0.039 (0.082)	0.119 (0.000)	-0.022 (0.330)	--	0.699 (0.000)	-0.183 (0.000)	0.097 (0.000)	0.216 (0.000)
QUICK	0.014 (0.545)	0.079 (0.000)	0.013 (0.559)	0.815 (0.000)	--	-0.063 (0.005)	-0.038 (0.094)	0.076 (0.001)
PART _PROF	-0.272 (0.000)	-0.649 (0.000)	-0.741 (0.000)	0.117 (0.000)	0.107 (0.000)	--	0.461 (0.000)	-0.807 (0.000)
OTHER _EMP	-0.189 (0.000)	-0.411 (0.000)	-0.568 (0.000)	0.078 (0.000)	0.007 (0.765)	0.723 (0.000)	--	-0.289 (0.000)
MS	0.277 (0.000)	0.896 (0.000)	0.513 (0.000)	0.262 (0.000)	0.195 (0.000)	-0.497 (0.000)	-0.321 (0.000)	--

(괄호는 p값임)

### 3. 회귀분석

실증모형의 종속변수인 피감사기업의 감사수임료를 1999년 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각 회계연도의 CPI로 조정 한 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 회계연도 동안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접합시킨 풀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4>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 중 피감사기업의 변수들의 회귀분석은 통제변수로 하기 때문에 변화 없이 모두 포함하였으나 회계법인의 변수들은 조정을 하여 Mode 1부터 Model 5까지의 모형을 설정하여 분

<표 5-4> 회귀분석결과(1)

변수		예상부호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Intercept	$\alpha_0$	?	8.9112*** (42.21)	8.9019*** (42.30)	8.9124*** (42.19)	8.9099*** (42.95)	8.8635*** (42.00)
LNTA	$\alpha_1$	+	0.3241*** (40.57)	0.3241*** (40.57)	0.3245*** (40.61)	0.32748*** (40.71)	0.3240*** (40.46)
SQEMPLS	$\alpha_2$	+	0.0046*** (11.70)	0.0046*** (11.69)	0.0046*** (11.66)	0.0046*** (11.63)	0.0046*** (11.60)
DA	$\alpha_3$	+	0.0003*** (3.75)	0.0003*** (3.74)	0.0003*** (3.85)	0.0003*** (3.59)	0.0003*** (3.73)
LIQ	$\alpha_4$	-	-0.0003*** (-4.49)	-0.0034*** (-4.50)	-0.0034*** (-4.49)	-0.0003*** (-4.49)	-0.0003*** (-4.60)
INVREC	$\alpha_5$	+	0.0013*** (2.55)	0.0013*** (2.53)	0.0013*** (2.47)	0.0013*** (2.55)	0.0013*** (2.52)
ROA	$\alpha_6$	-	-0.0034*** (-3.97)	-0.0034*** (-3.98)	-0.0034*** (-3.97)	-0.0033*** (-3.95)	-0.0034*** (-3.99)
INSTIT_PCT	$\alpha_7$	+	-0.0003 (-0.85)	-0.0002 (-0.83)	-0.0002 (-0.80)	-0.0003 (-0.86)	-0.0002 (-0.72)
LOSS	$\alpha_8$	+	0.0066 (0.43)	0.0066 (0.42)	0.0063 (0.41)	0.0065 (0.41)	0.0076 (0.49)
GR_SALES	$\alpha_9$	?	-0.0001 (-0.51)	-0.0000 (-0.52)	-0.0001 (-0.59)	-0.0001 (-0.49)	-0.0001 (-0.57)
VOLATILITY	$\alpha_{10}$	+	0.0635 (0.81)	0.0628 (0.80)	0.0620 (0.79)	0.0703 (0.90)	0.0572 (0.73)
BM	$\alpha_{11}$	-	0.0001*** (2.50)	0.0001*** (2.50)	0.0001*** (2.52)	0.0001*** (2.49)	0.0001*** (2.43)
XDOPS	$\alpha_{12}$	+	0.0004 (0.02)	-0.0001 (-0.01)	-0.0001 (-0.05)	-0.0001 (-0.01)	-0.0017 (-0.10)
RETURN	$\alpha_{13}$	-	-0.0044 (-0.77)	-0.0043 (-0.76)	-0.0044 (-0.77)	-0.0042 (-0.74)	-0.0040 (-0.69)
OPINION	$\alpha_{14}$	+	-0.0189 (-0.85)	-0.0187 (-0.84)	-0.0183 (-0.82)	-0.0198 (-0.90)	-0.0180 (-0.81)
NEWAUD	$\alpha_{15}$	-	-0.0103 (-0.58)	-0.0096 (-0.55)	-0.0082 (-0.46)	-0.0115 (-0.65)	-0.0084 (0.47)
NEWAUD_1	$\alpha_{16}$	-	0.0085 (0.53)	0.0088 (0.55)	0.0096 (0.61)	0.0085 (0.53)	0.0101 (0.63)

<표 5-4> 회귀분석결과(2)

변수		예상부호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SQEMP	$\beta_1$	?	-0.0012 (-0.58)	--	0.0008 (0.46)	-0.0002 (-0.12)	0.0043*** (4.42)
BIG5	$\beta_2$	+	0.0485** (1.75)	0.0398** (1.72)	--	0.0589*** (2.42)	0.0151 (0.59)
EQDEBT	$\beta_3$	+	0.0009** (1.77)	0.0010** (1.86)	0.0009** (1.78)	0.0010** (1.93)	0.0013*** (0.59)
QUICK	$\beta_4$	+	0.0001 (0.26)	0.0001 (0.23)	0.0001 (0.35)	-0.0001 (-0.13)	0.0001 (0.10)
PART_ PROF	$\beta_5$	-	-0.0015** (-2.12)	-0.0014** (-2.04)	-0.0019*** (-2.75)	--	-0.0014* (-1.97)
OTHER_ EMP	$\beta_6$	+	0.0014** (1.73)	0.0013** (1.65)	0.0012* (1.48)	--	0.0011* (1.39)
MS	$\beta_7$	+	0.0031*** (3.10)	0.0026*** (5.37)	0.0025 (2.62)	0.0030 (2.95)	--
YEAR00	$\gamma_1$	+	0.0755*** (3.68)	0.0745*** (3.65)	0.0745*** (3.63)	0.0741*** (3.61)	0.0713*** (3.48)
YEAR01	$\gamma_2$	+	0.2331*** (10.03)	0.2303*** (10.13)	0.2297*** (9.91)	0.2282*** (9.36)	0.2224*** (9.66)
YEAR02	$\gamma_3$	+	0.3336*** (15.65)	0.3322*** (15.68)	0.3319*** (15.58)	0.3301*** (15.56)	0.3303*** (15.48)
F Value			288.54	300.17	299.64	311.92	298.38
Adj R <sup>2</sup>			0.7908	0.7908	0.7906	0.7905	0.7899

( ) 안의 숫자는 t값임.

\*\*\*, \*\*, \* : 각각 최소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예상부호가 존재하는 경우는 양측 검정)

석하였다. Model 1의 경우 모든 피감사기업의 변수와 회계법인의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값은 288.54를 나타냈고 수정 R<sup>2</sup> 79.08%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Model 2은 회계법인의 SQEMP 변수를 제외한 모형이며 수정 R<sup>2</sup>가 79.08%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Model 3은 회계법인의 BIG5 변수를 제외한 모형으로 Model 4의 경우는 회계법인의 PART\_PROF와 OTHER\_EMP 변수를 제외한 모형이다. Model 3과 Model 4의 경우

수정  $R^2$ 가 각각 79.06%, 79.05%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Model 5의 경우 회계법인의 MS 변수를 제외한 모형으로써 수정  $R^2$ 의 값이 78.99%로 설명력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5-4>의 대부분의 Model에서 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BIG5의 회귀계수는 5% 미만의 유의적 양(+)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감사수임료는 국제적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회계법인이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제4장의 가설1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재무자본의 대용치로 설정한 EQDEBT의 회귀계수 또한 모든 Model에서 5% 미만의 유의적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의 타인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제4장의 가설2(a)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지급능력을 대용치인 QUICK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공인회계사의 수 중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PART\_PROF의 회귀계수는 모든 최소 1% 최대 10%미만의 유의적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제4장의 감사수임료는 총 회계사수에서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가설3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총직원 중 비공인회계사 비율인 OTHER\_EMP은 모든 Model에서 최소1%에서 최대5% 미만의 유의적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감사수임료는 총 직원수에서 비공인회계사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가설4를 지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로 계산된 총 감사수임료 중 각 회계법인이 획득한 감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유를 나타낸

MS의 회귀계수는 1%미만의 유의적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제4장의 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의 산업별 전문화가 높을 수록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가설5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1%의 미만의 아주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 제6장 요약 및 결론

감사수임료에 대한 연구는 관찰이 용이한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대용치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구제금융체제에 돌입하면서 회계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를 한국공인회계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회계법인의 특성이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수요적 관점 뿐만 아니라 공급적 관점에서도 감사수임료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장되어진 피감사기업과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종속변수는 피감사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감사수임료를 선정하였고, 피감사기업의 특성은 통제변수, 회계법인의 특성은 독립변수로 정의하였으며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실증모형의 종속변수인 피감사기업의 감사수임료를 1997년 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각회계연도의 CPI로 조정한 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 회계연도 동아니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접합시킨 풀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회계법인은 보

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화된 회계법인인 그의 명성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회계법인의 재무자본과 지급능력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책정할 것이며 이는 법적 소송에 패소할 시를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총 공인회계사 중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보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책정한다. 회계법인의 업무에 참여하고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원의 수가 적을수록 손해배상의 일인당 책임액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총 직원에서 비공인회계사가 차지하는 수가 높을수록 보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책정한다. 회계서비스산업이 다각화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비감사서비스의 영역 또한 중요한 사업부문인 바, 비공인회계사의 수가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회계법인의 산업별 전문화가 높을수록 감사수임료는 보다 높게 책정된다. 특정 피감사기업의 산업에 속한 실무적 경험이 많거나 혹은 대규모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실무 학습 효과로 인하여 다른 회계법인보다 차별화된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회계서비스산업은 일반적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와는 달리 감사수임료가 책정된다. 감사의견에 대한 과정의 관찰불가능성과 감사의견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상황이 복잡해지며 또한 예기치 못

한 상황으로 부실감사로 비취질 위험이 존재하다. 이로 인하여 감사수임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회계법인 설립조건의 완화와 감사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회계서비스산업이 충분한 경쟁상태에 놓여 있으며 무엇보다도 감사수임료에 대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앞서 이루어졌던 피감사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특성 즉 공급적 관점과 감사수임료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피감사기업의 특성 뿐만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특성이 감사수임료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각 회계법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영업전략을 실증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감사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사서비스의 할인현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연도별 더미변수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하여 연구기간의 경과에 따른 감사수임료의 증감 현상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가 미비하다.

앞으로의 연구는 위의 요소를 반영해 보다 적절한 감사수임료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1. 주인기. 1992. 외부감사보수체계의 개선방안. 공인회계사회.
2. 이만우·박주성. 1994. 우리나라 감사보수체계에 대한 평가. 경영학연구 (제23권): 257-279
3. 윤계섭·곽수근·이창우. 1995.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제29권 3, 4호: 78-115
4. 김호중·이석영. 1996. 현행 감사보수 체계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5권 2호:215-237
5. 최관·주인기. 1998. 외부감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피감사회사의 특성별 분석과 외국과의 비료를 중심으로. 회계저널(제7권 제1호):61-86
6. 최관·주인기. 1998. 외부감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피감사 회사의 특성별 분석과 외국과의 비료를 중심으로. 회계저널(제7권 제1호): 61-86
7. 최관·백완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제23권 제2호): 49-75
8. 정명환·한기택. 1999. 회계감사 수입료에 대한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인식차이에 관한 실증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제35호): 29-54.
9. 황인태·강선민. 2000. 한국 공인회계사 조직의 변천. 회계저널 제9권 제1호. 67-103.

10. 권수영 · 김문철. 2001.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 분석. 회계학연구(제26권 제2호): 115-143
11. 권수영 · 손성규 · 이영한. 2005. 한국감사시장의 적정감사보수 산정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제41호): 27-46
12. 나종길 · 최기호. 2005. 회계감사인의 산업별 전문성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제41호): 261-297
13. 이명곤 · 임진택. 2005. 감사인의 산업특성별 산업전문화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월간 공인회계사(2005년 5월호): 35-42

### 국내 사이트

1.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http://www.kicpa.or.kr>.
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국외문헌

1. Simunic, D. A.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ech 18: 161-190
2. DeAngelo, L. 1981a. Auditor Independence, Low 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August): 113-127
3. DeAngelo, L. 1981b.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December): 183-199

4. Francis, J.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 6(August): 133-151
5. Plamrose, Z.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 97-110
6. Palmrose, Z.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97-110.
7. Francis, J. and D. Stokes. 1986. Audit Prices, Products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ies: Further Evidence from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 (Autumn): 383-393.
8. Francis, J. and D. Simon. 1987. A Test of Audit Pricing in the Small-Client Segment of the U.S Audit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145-157
9. Francis, J. and D. Simon. 1988. The Effect of Auditor Change on Audit Fees: Tests of Price Cutting and Price Recovery: *The Accounting Review* (April): 255-269
10. Palmrose, Z. 1989. The Relation of Audit Contract Type to Audit Fees and Hours. *The Accounting Review*(July): 488-499
11. Dye, R. 1993. Auditing Standards, Legal Liability and Auditor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 887-914
12. Francis, J. and J. Stikes. 1996. Audit Pric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ies: Further Evidence from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Autumn): 383-394

# ABSTRACT

## Accounting Firms' factor affect to Audit Pricing

Kim, hyo-eu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ior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audit firm characteristics on audit fees has been limited by an inability to observe information about audit firm financial circumstances, ownership and the mixture of services provided. Disclosure rules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late 1997 provide an exceptional opportunity to observe such information and investigate how specific attributes of audit firms affect audit prices in a competitive market. I investigate in particular how financial strength, concentration of ownership among professionals and employee mix are associated with audit fees.

I document that, in addition to a positive Big 5 effect, audit fees in the Korean audit market increased with the audit firm's ratio of equity to debt and increased with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among accounting professionals. I also find that audit fees were greater for firms that had more non-CPA employees. These results support hypotheses based on demand for audit services being positively affected by financial and reputation capital.

Research on industry specialization has produced mixed results. I provide additional evidence about the influence of industry concentration on audit fees by documenting that audit fees increased with the proportion of industry audit fees earned by a firm.

My results demonstrate that audit fees are affected by auditor characteristics other than membership in the Big 5.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argument that auditors provide credible evidence of their independence and competence through building up financial and reputation capital. The recent division of audit practices and consulting practices was intended to reduce a perceived independence problem when auditors provided both audit and non-audit services. In one sense, it may have reduced the ability of audit firms to enhance their reputation capital by bringing more services under the firm's brand name.

My analysis is somewhat limited by coarseness of data,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variable used to proxy for the mix

of non-audit and audit services. However, the fact that this variable is noisy would bias against finding strong results. The results cannot necessarily be generalized to audit markets outside Korea but they do represent interesting findings from a competitive audit market.